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36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소병훈 · 박희승 · 이개호
이성윤 · 강준현 · 김영진
안태준 · 김태선 · 김교홍
용혜인 · 강득구 · 김원이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청년층·중년층”을 “청년·중년·장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필요한”을 “각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3 년-----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청년층·중년층·노인</u>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u>청년·중년·장년</u> -----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 ----- ----- ----- -----3 년----- -----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

-----각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필요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 ① 시·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

<u>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u> <u>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u>
--